

법령 인용조문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준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4. 7.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3월 2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4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4. 2)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현행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 근거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아 일괄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법규운영과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37건 (86개 인용조항) 정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9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 제4조제7호 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5조”를 “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을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개정
 - 제4조 중 “ 지방재정법 제14조”를 “ 「지방재정법」 제23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함.
 - 제6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 및 제18조 중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각각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의 개정
 - 제2조제1호 중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법 제37조 벌칙”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 「평생교육법」 제9조”를 “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 「평생교육법」 제18조”를 “ 「평생교육법」 제25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의 개정
 -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0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 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함.
 - 제2조제3호 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으로 함.
 - 제6조제2항 중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 함.
 -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의 개정
 - 제14조의2제5항 중 “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을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를 “「관광진흥법」 제37조”로 함.
 - 제6조 중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4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함.
 - 제6조의2 중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제2호 중 “규칙 제9조의2”를 “규칙 제16조”로 함.
 - 제6조 중 “영 제6조제1항제5호”를 “영 제7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함.
- 제2조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함.
 -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94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5항제11호”를 “영 제28조 제5항제9호”로 함.
 - 제3조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함.
 - 제4조제1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8조”로 함.
 - 제6조 중 “영 제26조의 4 별표 3”을 “영 제44조 별표3”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의 개정
 -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함.
 - 제3조제1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함.
 - 제3조의2제1항 중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7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 제1항”으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제3조제8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의 개정

- 제3조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 제4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전인등에관한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전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으로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등포구 조례 중 근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 37개의 조례임.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審査結課：原案可決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3 호
----------	---------

제출연월일 : 2009.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그 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비 일치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바로잡아 정확한 법규운영과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본문 및 서식 중 상위(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비 일치사항 정비.
 - 조례 37, 조문 86

(단위 : 건)

정비대상 조례	정 비 결 과		비 고
	조례	인용조문	
137	37	8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단순 법령조문의 비일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붙임 :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5조”를 “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의 근거법령난 중 “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 「지방자치법」 제91조”로, “약사법 제16조”를 “ 「약사법」 제20조”로, 사무명난의 7호나목 및 “동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를 삭제하며,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로, “동법 제64조 내지 제65조”를 “동법 제69조부터 제71조”로, “동법 제67조 내지 제69조”를 “동법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7조”로, “동법 제71조의2”를 “동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로, “동법 제71조의3, 제79조”를 “동법 제81조, 제89조”로, “의료법 제30조제3항”을 “의료법 제33조 제3항”으로, “동법 제30조제6항”을 “동법 제33조제5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의2, 제72조”를 “동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7조, 제93조”로, “의료법 제31조”를 “의료법 제35조”로, “ 「의료법」 제60조, 제61조”를 “의료법 제81조, 제82조”로, “동법시행규칙 제22조”를 “동법시행규칙 제24조”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를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동법 제13조의5”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동법 제13조의 6”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동법 제13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8”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26조”로, “동법 제17조의3”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의료기사법 제3조”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로,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로, “의료법 제32조

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23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법 제37조 벌칙”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9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평생교육법」 제18조”를 “「평생교육법」 제25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을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

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를 “「관광진흥법」 제37조”로 한다.

제6조 중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규칙 제9조의2”를 “규칙 제16조”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6조제1항제5호”를 “영 제7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94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5항제11호”를 “영 제28조제5항제9호”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8조”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26조의 4 별표 3”을 “영 제44조 별표3”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